

제15장 경쟁 정책

제15.1조 목적

양 당사국의 무역 관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의 금지, 경쟁 정책의 이행 그리고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믿는다.

제15.2조 경쟁법과 경쟁당국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경쟁법과 규정에 대한 모든 면제가 특히 투명하고 공공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각국의 경쟁 정책, 법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발하며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제15.3조 이행

1. 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투명성, 적시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또는 규정에 따라 제재 또는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발언을 하며,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통하여 또는 그 당사국의 독립적인 사법당국에서 제재 또는 시정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구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과 규정을 대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 서면으로 제공되며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모든 관련된 사실의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를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제15.4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통보, 협의, 정보교환, 조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경쟁법 및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협력한다.

제15.5조

통보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관행에 관련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 통보한다.

2. 양 당사국의 법에 반하지 않고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통보는 집행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제15.6조

협의

1.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의 법에 반하지 않고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그 사안이 양 당사국간 시장, 소비자, 무역 또는 투자의 적절한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5.7조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¹

1.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따라, 각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각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과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국내 법 및 법 제도에 규정된 것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기밀성을 부여한다.

제15.8조

기술 지원

¹ 에콰도르의 경우,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는 자국의 법에 따라 유보된 정보를 포함한다.

1. 양 당사국은 경험 교환, 역량 강화, 그들의 경쟁법과 정책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제도적 역량 강화와 경쟁 문화의 촉진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 및 우선순위와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5.9조 공기업과 지정독점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과 지정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각국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그러한 법의 적용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기업과 지정독점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장의 규정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15.10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상의 제20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15.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관행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경쟁의 방해, 제한 또는 왜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하는 기업 간 합의 및 기업 단체의 결정
- 나.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
- 다. 특히 지배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각국의 경쟁법에 따른 기업의 합병 또는 그 밖의 구조적 결합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에콰도르의 경우, 시장지배력 통제 관리청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 나. 에콰도르의 경우, 「규제와 시장지배력 통제 기본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다. 이 협정 발효 후 위에 언급된 법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국이 각국의 경쟁법과 규정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위하여 각국의 지역 및 국가 당국에 부여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